

제359회 임시회
2017. 10. 17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설 립 일 : 2017. 2. 17.(대표이사 : 권수애) ※ 대표이사 : 비상근
- 조 직 : 29명(이사회 17, 사무처 12)
 - 이 사 회 : 이사 15명(이사장 : 도지사), 감사 2명
 - 사 무 처 : 12명(사무처장, 2팀 1센터)
- 출연계획 : 1,223백만원(재단운영비) ※ 인건비 458, 경상적경비 232, 사업비 533

(단위: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7년			2018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,135,000	300,000	835,000	1,223,300	923,300

○ 주요기능

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연구·개발 사업
-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
-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양성평등,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-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5. 검토의견

○ 법적근거의 적정성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,
-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) 및 같은 법 제20조(재정지원),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」 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및 같은 법 제8조(재정지원 등)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, 출연 계획안의 법적 절차는 적정함.

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성·다양성·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로 일·가정 양립정책 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개발·연구 및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(Think tank)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- 따라서,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**충북여성재단**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**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동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으로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출연은 관련규정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.**
- 다만, 출연은 충청북도지사가 재정규모, 국가정책과의 연계성,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,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,
- **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등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.**
- 아울러,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.

〈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〉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합계	주 요 내 용	비고
합 계	1,223		
인건비	458	- 사무처 직원 9명 급여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금)	
기본경비	232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-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1주년 학술심포지엄	
사업비	533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
참고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 및 관련규정 발취

1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합계	주 요 내 용	비고
합 계	1,803,892		
국 비	316,796	○ 위탁 운영 · 1366충북센터 운영 : 232,296천원 ·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: 84,500천원	'17년 수준
도 비	1,485,596	○ 출연금(재단운영) : 1,223,300천원 ○ 1366충북센터 운영 : 262,296천원	
사업수입	1,500	○ 교육비 수입 : 1,500천원 ○ 수탁용역 : 미확정	

2 관련규정 발취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1. 설립 목적
 2. 주요 업무와 사업
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- 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」

- 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**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충청북도(이한 “도” 라 한다)의 출연금
 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 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 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재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